

59차 언론인권포럼

피의사실공표와 언론의 역할

| 일시 | 2019년 12월 18일 (수) 10:00~12:00

| 장소 | 언론인권센터 강의실

피의사실공표와 언론의 역할

■ 사회 윤여진 상임이사 언론인권센터

■ 발제1 피의사실공표죄의 법리적 검토
김준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로

■ 발제2 피의사실공표 언론보도의 문제점
김하정 사무차장 언론인권센터

■ 토론 강청완 기자 SBS
이승선 교수 충남대학교
전진한 소장 알권리연구소
정철운 기자 미디어오늘

■ 주최 (사)언론인권센터

목 차

1. 피의사실공표죄의 법리적 검토	4
--------------------------	---

김준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로

2. 피의사실공표 언론보도의 문제점	16
---------------------------	----

김하정 사무차장 언론인권센터

피의사실공표죄의 법리적 검토¹⁾

김준현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로)

1. 발제에 앞서.

지금도 진행중이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하여 가족의 비리의혹에 대한 언론보도는 지속되고 있다. 최초 언론보도는 정치권 등에서의 의혹제기를 전달하는 수준이었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의 언론보도 내용은 검찰의 수사내용에 집중되었다. 검찰이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고, 공인 또는 공인의 가족의 비리의혹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 주장은 일견 타당한 면이 있어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러 연유로 검찰개혁이라는 이슈와 개개인의 정치적 입장과 연결되면서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사안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피의사실공표와 언론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필요해진 이유라 할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와 더불어 검찰개혁과의 관련성도 고려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왔던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특검의 피의사실 공표는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은 적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원리원칙대로라면 현 정권의 치부가 될 사안에 대하여도 수사를 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면 그 공표사실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주요 사명인 언론도 마찬가지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한 보도에 있어서 검찰과 언론에 대한 한쪽의 비판은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몇 가지 중요한 문제는 제기했다.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현 제도하에서 피의사실공표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절차와 한계를 검찰의 자체 규정이나 판단에 맡기는 것은 현재의

1) 이 발제문은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리기위한 세미나'(2012. 8. 박법계의원실 주최)에서 발제했던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과 2019. 12. 국회 입법조사처 주최의 '피의사실공표와 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에서 토론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검찰권력을 더욱 비대화하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것, 결국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2. 피의사실공표죄의 존치에 대하여

피의사실 공표죄가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수사기관이 중요범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전 언론브리핑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정치적 수사라는 의혹을 받는 수사뿐만이 아니라, 강력범죄자 또는 국민 다수의 관심을 끄는 연예인 관련사건이나 성폭행범죄 등의 수사과정에서도 공소제기전 피의사실 공표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공표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인식이 수사기관에서는 팽배하고 국민들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측면에서 피의사실공표죄가 법규정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사라졌으므로 아예 폐지해야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그래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피의사실공표죄가 존속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확인이다.

3.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1)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형법 제 126 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하는 것은 증거인멸 등으로 범죄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피의자의 명예를 손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여 ‘국가범죄수사권(범죄수사기능)과 피의자의 인권(명예)’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²⁾

하지만 국가수사권보호보다는 피의자의 인권에 방점이 찍혀야한다고 본다. 형법조문의

2)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박영사, 2005, 798면;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756면;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사, 1999, 658면;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5 871~872면;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5, 702면;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805면;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삼지원, 2002, 791면;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05, 632면;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2003, 711면.

체계상 피의사실공표죄는 제 7 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고, 그 주체가 공무원인 진정신분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수사권보호 측면은 형법 제 172 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의율이 가능하다. 더욱이 대법원 판례는 '법령상의 비밀'을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뿐만 아니라 객관적·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상황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한다.³⁾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 역시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별도로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것은 추가적으로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법익을 고려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2) 피의자의 인권으로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이 1 차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 역시 형법 제 307 조 이하의 명예훼손죄 규정에서 다루고 있다. 더욱이 피의사실공표죄는 공판청구전의 공표행위만 처벌대상이다. 공판청구후 공표 행위로도 피의자의 명예는 훼손될 수 있지만 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명예훼손만으로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존재이유를 설명하기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피의사실공표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부의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는 헌법상 원칙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본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의 확정판결전까지 피의자에게 국가권력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영장주의나 강제수사와 같이 국민 개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공판청구전 피의사실이 공표되면, 법률에 의한 재판보다 여론재판이 선행하게 된다.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여론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유죄의 심증을 유도한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법관들 역시 이러한 여론의 압박에 자유로울 수 없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혐의사실, 혐의를 뒷받침할 유리한 증거, 참고인들의 진술 등등을 공판 전에 대중에게 노출함으로써 사실상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키며,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중대범죄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는 요즘에는 국민배심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3) 대법원 2012.3.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또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사실상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의사실 공표는 적법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뤄져야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된다고 할 것이다.

수사기관의 공표에 기한 범죄보도는 수사기관이라는 권위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폐해가 더욱 크고 수사기관이 일단 피의사실을 발표하면 수사기관 스스로 이에 기속되어 그것을 번복하기 어렵고 그 피의자를 입건하지 않을 수없는 폐단이 생길 수도 있다.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이것을 보도케 함으로써 그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현재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법무부 훈령으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내부 직무명령에 불과하다.

3) 따라서 피의사실 공표죄는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사법제도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법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에 밀려 폐지될 운명에 처한 것일 아닌 여전히 유의미한 법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있어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의 근거이기도 하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상호 충돌하는 권리를 이익형량하는 차원에서 인정되나, 피의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하는 기본권이 개인의 인격권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제도, 재판을 받을 권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4. 무엇이 '피의사실'인가

1) 처벌대상이 되는 '피의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문구적 해석으로 '피의사실'은 '범죄혐의가 있는 사실'이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공소장 적시 사항이 모두 피의사실이라거나 공소장 적시사항만이 피의사실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공소사실 중 피의자의 범죄혐의 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연관성), 그 관여 정도가 중대하여 범죄혐의사실을 구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경우(중요성)의 사실관계로 한정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반대로 최종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도 범죄혐의를 두고 수사한 사실도 피의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의사실을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피의자의 사생활 등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공표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원칙과는 상충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2) 이런 공백은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사적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는 사실상 예상하기 어려우나, 만약 수사기관이 사생활 등 정보를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폐지되어야 하지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해당 정보가 법령상 비밀에 해당한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법률에서 비공개정보로 규정하여 별도의 처벌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피의자의 사생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하다는 생각이다.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국민의 알권리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언론이 이를 모르는 바는 아닐 것이다. 단지 선정성 경쟁의 가담자이자, 희생자라고 본다.

3) '피의사실'의 범위를 한정 해석하는 것은 반대로 공개할 수 있는 '피의사실'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피의사실 공표와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를 위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피의사실의 기준을 만들고 그 절차와 방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검찰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언론은 뒤따라가고, 여론은 한쪽으로 쏠리면서 여론재판이 벌어지는 작금의 상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금지되는 '피의사실'의 범위가 확정하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그 금지된 피의사실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할 것인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 내면 된다.

5. 위법성조각에 대하여

가. 형법 제 310 조의 원용여부

피의사실공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 310 조의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진실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공익성'이 충족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은 단지 명예에 그치지 아니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와 국가의 사법권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 규정을 보더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임에 비하여 피의사실공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법정형으로 규정하여 형벌의 종류와 형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임에 반하여 피의사실공표죄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조각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나. 정당행위

1) 형법 제 20 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는 훈령도 포함되므로, 위 법무부의 규정이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에 규정한 피의사실 공표죄의 정당화 근거를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한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본다. 더욱이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법익을 감안하면 법무부 훈령만으로는 정당화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피의사실 공표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안별 검토해야 하므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 피의사실공표죄가 존속하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2)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하여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지만, 이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은 다수 존재한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내용을 인용한다.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 27 조 제 4 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 126 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 198 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⁴⁾.

형사범죄가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피의사실공표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대법원 판례가 위법성 조각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는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며, 위법성 조각사유가 별도로 법령으로 제정하지 않는 이상 아주 특별한 사례가 아닌 이상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것이다.

6. 개정 '형사사건 공개금지등에 관한 규정' 에 대하여

1)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최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되었다. 형법상 정당행위의 근거를 훈령으로 정비한 것이다. 그러나 훈령으로 정당화근거를 두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별도 법안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 새 규정은 여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규정의 예외적 공개사유는 “1.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검찰청법」제 46 조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이하 "수사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4)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 다 68474 판결 등.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5. 수사에 착수된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다. 1-4 호는 이전 준칙과 비슷하나 5 호가 신설되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이다.

이들 각호의 사유는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의 요건에 근접해있다. 그러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던 기존 사안을 되돌아보면 1-4 호의 사유를 이유로 한 피의사실공표 행위는 찾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논두렁 시계사건'과 같은 내용은 1-4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3) 추가된 5 호는 1-4 호외에 국민에게 알릴 중요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피의사실 공표 사건은 '국민의 알권리' 를 위한 것이라는 해명과 함께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다. 수사기관과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목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 외부 위원회를 두어 최소한 제어를 하면서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실적으로는 차선책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중요사건의 범주나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엄격한 위원회 규정을 마련해 보완해야한다. 국민의 알권리나 중요사건이라는 규정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자의적이다. 규정 제 27 조는 대검찰청 예규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대상 사건 및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등'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검예규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지침'만을 제정하였고, 이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만 담겨있다.

4) 개정 규정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의 정당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적어도 규정 기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공표가 가능한 범위를 확정하고자 한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공표가 불가한 사건도 확정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에 위반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이 어떻게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어야 한다. 개정 규정 제 32 조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전의 준칙은 보고와 함께 '감찰을 실시하여 공개 경위, 내용, 이유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감찰 결과에 따른 내부 징계 및 형사처벌의 절차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규정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전의 '감찰'에서 '보고'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수준을 낮춘 것이다.

7. 개선에 대한 의견

가. 법률 제정에 대하여

1) 훈령이 아니라 법률로 피의사실공표가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피의사실공표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의하여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 반복되고 있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법률로 명백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이외의 행위는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피의사실공표의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과 현 형법에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2) 먼저 피의사실공표의 절차와 방식, 공표대상 피의사실 등을 규정하는 방안은 위 공개금지 규정을 보완하여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 법률로 정한 절차와 방식이외로 이뤄진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적어도 명확하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에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하고, 공개금지 규정 등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절차와 방법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나. 무엇을 담을 것인가.

1) 현행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제 5 조에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7 조 공개금지정보에 "1.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2. 사건관계인의 범죄전력 3. 사건관계인의 주장 및 진술·증언 내용, 진술·증언 거부 사실 및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4. 검증·감정, 심리생리검사 등의 시행 및 거부 사실과 그 결과 5. 증거의 내용 및 증거가치 등 증거관계 6. 범행 충동을 일으키거나 모방 범죄의 우려가 있는 특수한 범행수단·방법 7.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다고 원칙을 정하고 있음에도, 규정 제 9 조는 예외사유를 두고 있다. 특히 중요사건 등(중요사건의 기준이 없다)에는 혐의사실 외에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진실보 한 측면이 없진

않지만, 중요사건 등에 대한 기준이나 수사상황이라는 문구의 불명확성은 정비되어야 한다.

2) 피의사실은 범조문상 '범죄혐의사실과 범죄혐의사실을 구성함에 있어서 직접 연관이 있고 그 정도가 중요한 사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는 공개금지대상 '피의사실'로 규정된다. 공개금지대상 피의사실을 공개할 예외적 기준과 절차, 방법을 법률에서 정한다. 현행 규정의 1-5 호 예외공개사유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5 호의 중요사건의 개념이나 언론의 요청 등은 여전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할 수 있는 조치 규정을 둔다.

3) 피의사실과 연관성이 없는 사생활 등 정보는 '공개금지 대상 정보'로 규율한다.

사생활 등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하므로 공개예외사유를 두지 않는다. 법무부의 위 규정상 불명확한 '수사상황'이라는 규정도 비공개정보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도록 한다. 위반행위는 다른 법률에 의한 조치 및 내부 감찰과 징계의 조치 규정을 둔다.

4) 법률 규정으로 피의자의 반론권 의무화 규정을 주장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실적 도입방안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 기타 방안

1)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형사소송법 제 260 조 재정신청 조항에 피의사실공표죄의 고발권자까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서 피공표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었다.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비하여 재정신청의 요건을 까다롭게 한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260 조 제 1 항의 단서조항 “다만, 「형법」 제 126 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⁵⁾

5) 제 260 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 123 조부터 제 126 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 126 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2) 형사소송법은 지난 2007년 재정신청대상 사건을 모든 고소대상 범죄로 확대하면서, 과거에 시행했던 공소유지 변호사제도를 폐지했다. 공소유지변호사제도는 재정신청결정이 내려진 형사사건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변호사제도다. 이는 이전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공무원직무관련 범죄, 특히 수사기관과 관련한 범죄(형법 제 123 조부터 제 125 조)만 재정신청대상이었으므로, 공소유지를 수사기관의 대표격인 검찰에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한 제도였다. 그러나 재정신청대상 범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되면서 공소유지변호사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피의사실공표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소유지변호사제를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상범죄는 수사기관과 관련한 범죄인 형법 제 123 조부터 제 126 조의 범죄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⁶⁾

3)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이는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사실공표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죄의 행위주체와 그 행위를 수사하는 주체가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직무범죄를 다루는 내부부서나 외부기관을 신설하여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기관의 범죄행위 수사과 기소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공개금지규정상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담기관에 사건을 이송하여 외부감찰이나 수사결과에 따른 조치(징계나 형사처벌)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②제 1 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 10 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 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 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제 1 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간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 2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2 항제 3 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6) 구 형사소송법상 공소유지변호사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265 조 (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 ① 법원은 제 262 조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이 그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 진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를 변호사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지정을 받은 변호사는 당해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단,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의 지휘는 재판장이 인정한 사항에 한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한다.

④ 법원은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지정된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법률로써 정한 액의 보수를 받는다.

9. 보론 - 언론의 역할

1)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된 피의사실이외의 사항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알 권리는 국가가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평등의 차원에서 시작된 권리다. 법률 또는 규정으로 공개되는 피의사실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하여 취재와 보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신상정보나 사생활 등 피의사실과 무관한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2)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 1 차적 취재원인 검찰의 공표에만 의존토록 하는 것은 분명 언론의 입장에서는 제약이 될 것이다.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또한 수사과정을 있는 그대로, 또는 수사기관의 의도에 따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소제기후 공판단계에서 나타나는 증거와 진술 등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다. 범죄사건, 특히 공인과 관계된 국민적 관심이 되는 사건의 경우는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낙종보다는 오보를 두려워하는 것이 맞음에도 오보보다는 단독, 특종이 더 평가를 받고 있는 언론계 현실에서는 탁상공론 같은 얘기이지만 말이다. 최근의 형사사건 보도를 보면 '00일보의 취재결과'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예전의 '검찰고위관계자에 따르면'을 대체한 문구다. 그런데 취재원을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본지 취재결과로 바꿔 표기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 보도의 내용이 국민의 알권리와 관계되는 '피의사실'(국민의 알권리상 정당화된다고 보는) 인지, 수사과정상 지엽말단적인 것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피의사실공표 언론보도의 문제점

김하정 (언론인권센터 사무차장)

목 차

1. 머리말
2.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사례
3. 피의사실공표 언론보도의 문제점
4. 언론의 역할
5. 맺음말

1. 머리말

최근 한국사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둘러싸고 공정, 세대불평등, 검찰개혁 등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히어가며 한차례 홍역을 앓았다. 논란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는 혼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수 없이 쏟아지는 기사와 정보 속에서 중심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힘들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 되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그리고 그것을 보도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국민은 언론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중 수사과정의 ‘피의사실공표’을 둘러싼 검찰과 언론의 역할은 핵심 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피의사실공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26조에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공판청구(公判請求) 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의사실(被疑事實)의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범죄이다. 또한 사람의 신문기자에게 알려주는(작위) 경우, 또는 비밀을 보지(保持)할 법률상의 의무 있는 자가 신문지기자의 기록열람을 묵인한(부작위)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소년법 제68조).

하지만 최근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는 피의사실공표죄의 규율대상이 수사기관으로,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에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법률제정이 아닌 ‘훈령’으로 정하여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티타임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전문공보관을 두는 등 그동안의 피의사실공표 관행을 일정부분 개선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의사실공표는 단연 검찰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피해사실과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고 보도가 되고 있다. 또 검·경찰의 수사과정을 둘러싼 언론보도로 인해 여론재판이 되고 수사재판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⁷⁾

본 발제에서는 이러한 피의사실공표와 언론보도로 인해 인권이 침해당하는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되짚어본다. 그리고 언론의 역할과 이후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사례

피의사실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보도자료나 공개브리핑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되지만, 이 외에도 언론이 수사기관 담당자나 사건관계인을 통해 취득하여 보도된다. 이 같은 피의사실공개로 인권이 침해당한 피해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 사례1 : '○○풍등화재'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사건 18진정0917000)

본 사건은 작년 10월 풍등화재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에 의한 진술강요, 피의사실공표’ 등으로 진정·접수되어 사건 관련자들에게 권고 결정이 난 사례로, 본 글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 부분만 발췌하여 간략·수정하였다.

1. 진정요지
피해자는 ○○○○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서 2018. 10. 7. ○○시 ○○구 ○○동 산0 야산에 있는 ○○○○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주변에 있던 풍등을 주워 날렸다가 같은 달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서(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중략)

7) 피의사실공표와 함께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유출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지만 본 발제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한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피진정인 2는 2018. 10. 8. 언론사 기자들에게 '◇◇청 홍보계 취재안내 2보'라는 제목하에 피해자의 이름,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피진정인 2는 사건 당시 ◇◇◇◇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홍보계 언론홍보 담당 경찰관이다. 2018. 10. 7. 10:55경 발생한 ○○ 저유소 화재는 당시 주요 신문, 통신사, 방송 매체 등의 메인 기사가 될 만큼 세간의 관심이 컸던 사고였다. 과열된 취재경쟁으로 사실과 다른 과장·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컸다. 이에 피진정인 2는 최소한의 취재 안내 차원에서 2018. 10. 8. 언론사 기자들에게 '◇◇청 홍보계 취재안내 2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의 성명 중 성의 일부, 국적, 나이, 성 별, 비자종류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단 등 언론사 기자에게 발송 하였다.

나이, 성명(혹은 영어 이니셜), 성별은 언론보도에 있어서 기사의 기본적인 재료이며, 당시 ◇◇◇◇청 26개 언론사 출입기자단 및 사건을 취재한 수많은 취재진들이 공통되게 요구하는 사항이었다. 또한 문자안내 메시지가 나가기 전 피해자의 국적 등이 일부 언론사에 이미 속보로 보도된 상태였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성명 등 신상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성명(♣♣♣♣♣ ♡♡♡♡♡♡ ○○○ ♣♣) 중 성의 일부에 해당하는 '♣♣♣♣♣'만을 발송 내용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성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언론보도 관례상 평소 출입기자단에서 비보도가 전제 되어 왔다.

3. 인정사실

2018. 10. 8. 19:17 연합뉴스는 "경찰 ○○ 저유소 화재 관련 실화 혐의로 ○○○○인 긴급체포"라는 제목으로 위 실화사건에 대해 제1보를 보도했고, 이어 19:25 같은 제목으로 "▽▽ ▽▽ 경찰서는 지난 7일 발생한 ○○ 저유소 화재사고와 관련, 실화 혐의로 ○○○○인 A(2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고 제2보를 보도했으며, YTN과 MK도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하였다.

2018. 10. 8. 19:34경 피진정인 2는 '◇◇청 홍보계 취재안내 2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성명 중 성의 일부,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 혐의 사실을 기재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이후 같은 날 19:43 MBN은 "화재 원인 실화...○○○○인 긴급 체포"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성명 일부,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를 밝히며 위 실화사건을 보도하였다.

4. 판단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나, 수사기관의 피의 사실 공표행위는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피진정인 2는 2018. 10. 8. 19:34경 '◇◇청 홍보계 취재안내 2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성명 일부,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냄으로써 피해자의 신원이 언론에 공개되도록 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피의사실 공표의 필요성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이름,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까지 상세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국민들의 관심사는 국가 주요기반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지, 공적인 인물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의 신상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설사 국민적 관심이 개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 스스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공표행위를 자제해야 함이 마땅하다.

피진정인 2는 '과장·추측성 보도로 인한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실제로는 그와 같은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가 오히려 피해자 개인은 물론이고 ○○ 저유소 화재사건과 무관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실화의 가능성에만 세간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여 안전관리 부실 문제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음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 2의 행위는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0조, 제14조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위 사건은 작년 세간의 큰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세간의 이목은 사건보다는 이주노동자의 혐오로 번져나갔다. 분명 경찰의 잘못된 공식발표로 인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이 침해당했고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편견을 악화시켰다. 하지만 언론사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사건이 수사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국적을 전면으로 내세워 여과 없이 신상을 노출시키고 피해자의 혐의가 인정된 듯이 무분별하게 보도하였다. 또 보도내용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피해자의 신상에 집중되어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 사례2 : 경찰의 부당수사 및 피의사실공표 (국가인권위원회 사건 17진정1087400)

본 사례는 경찰의 부당수사로 공표된 피의사실이 객관적 사실 및 증거에 근거함 없이 유죄를 속단하게 한 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관련자들의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하였다. 본 글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관련 부분만 발췌하여 간략·수정하였다.

1. 진정요지 및 당사자 주장
 진정인은 2017. 9. 14.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 피진정인은 교통사고 가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하나만을 가지고 진정인을 교통사고 보험 사기범으로 단정하고, 진정인이 보험사와 전화를 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허

위 기재하는 부당·편파수사를 하였다. 또 피진정인은 2017. 10. 27. 검찰에 송치하기도 전에 SBS, KBS 등 언론사에 진정인의 나이, 직업 등과 함께 보험금을 청구한 사기 피의자로 단정하는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개하였다.

2. 인정사실

2017. 9. 22.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교통사고 피해자로 조사하고 진술 조서를 작성하였다. 진정인은 고의사고 여부를 묻는 피진정인의 질문에 대해 고의사고에 의한 사기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017. 9. 26. 피진정인은 범죠히지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진정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마음을 먹고 차량에 뛰어들었으며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의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2017. 10. 11.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였는바, 진정인은 거듭 보험사기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피진정인의 "이번 사고로 보험사에 보험금은 청구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이번 사고로 보험을 청구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017. 10. 18. 피진정인은 "교통사고 뒤에 숨은 '보행자 보험사기' 꼼짝 매"라는 제목으로 보도 자료를 작성하였는바, 보도자료는 A00등 5명의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열거하는 구성으로, 진정인에 대한 부분은 "C00(38세, 남, 대학원생)은 2017. 9. 14. 18:40경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부근 횡단보도를 서행하는 차량 보닛으로 몸을 던지는 고의사고 후 경찰서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라고 기재하였다. 피진정인은 작성한 보도자료와 관련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언론에 제공하였다.

SBS 등 총 16개 언론사는 2017. 10. 18. 저녁뉴스 시간에 "일부러 몸 던지고, 발 '슬쩍' ...어 설픈 보행자 보험사기"라는 제목으로 피진정인이 제공한 영상자료에 얼굴을 음영처리하여 방영하거나, "사고가 이상한데...", 차에 몸 던지기 보험사기" 등으로 기사화 하였다.

피진정인이 작성한 범죠히지보고서 및 의견서 외 경찰 수사기록에는 진정인의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중앙지방검찰청은 진정인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3. 판단

① 피의자 특정 여부

SBS 등 언론사는 위와 같은 익명자료와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음영 처리하여 방송하였는데, 이와 같이 익명 처리된 내용만으로는 진정인의 가족을 넘어서서 거주지 주변사람이나 학교 관계자 등이 피의사실의 당사자가 진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로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그러나 피의사실의 공표는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여부 및 그에 대한 공익과의 비교형량을 하는 것 외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형사절차에 영향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 청구"로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고, 또한 당시 진정인이 참고인 조사 및 피의자 신문에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음에도 "각 피의자 범죄사실 일부 부인하나"라고 혐의사실 부인의 정도가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피진정인이 이 사건 진정인에 대한 보험내

역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운전자 재조사, 각 피의자 보험내역 조회 등을 통해 범죄사실 입증 형사입건(송치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형법」 제126조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 조 및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위반하여 객관적인 사실 및 증거에 근거함 없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표한 것이고, 이로 인해 형사사건의 피의자였던 진정한 으로서는 당시 진행 중이던 형사절차에 있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예단이 형성 될 가능성이 높아졌 음은 물론이거니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공표한 피의사실에 명확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보험금 청구' 사실, 즉 보험내역을 조사하지 않은 큰 오류를 범했고, 허위사실 그대로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그리고 언론사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보도자료 그대로 인용했다. 언론사에서 보험청구내역을 한 번이라도 체크했다면 보도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엄연히 언론사에 책임이 있다. 검찰과 경찰의 보도자료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고 제공된 자료만으로도 빠른 시간 내에 기사를 쓸 수 있다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피해자 측의 반론권을 무시하고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사례3 :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논란

2014년 서울시향 직원들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폭언과 인사전횡을 벌이고 강제 추행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그 중 서울시향 직원인 곽씨는 2014년 말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과 함께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곽씨를 강제 추행하려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지휘자 대우 문제 등으로 정명훈 예술감독과의 갈등까지 거론되며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또한 서울시까지 언어폭력과 성희롱에 대해 박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게 된다. 사실이 아님을 강하게 주장하던 박현정 전 대표는 결국 이사회 하루 전 자진 사의표명을 한다.

2015년 8월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곽씨는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점이 사실로 인정돼 박 전 대표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올해 11월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를 받는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당시 박 전 대표를 둘러싼 언론은 서울시와 정명훈 전 예술감독, 서울시향 직원의 주장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박 전 대표의

▶ 박현정 전 대표 직원폭언·성추행 논란관련 기사제목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성희롱·폭언 사실로 드러나…해임 절차 진행

박현정 “호소문 작성 서울시향 17명 찾아달라” 진정서… 찾아서 뭐하게?

서울시향 정명훈 예술감독 “박현정 대표 주장 말도 안 돼”

정명훈 감독 사의 표명… “인권 침해 더 못 참겠다”

“억울한 마음 일단 묻는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

“진실은 밝혀질 것”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사임

감사원, 서울시향 감사…박현정·정명훈은 조사 안 해

주장을 중심으로 보도한 건 사퇴의사를 밝힐 때에 불과했다. 언론의 입장에서 사실진위를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어느 입장에 서서 보도하는가에 따라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 「헌법」제27조제4항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함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인권사상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에는 혐의가 있는 것만으로도 범인처럼 다루어졌다. 더구나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른바 혐의형(嫌疑刑)이 과해져 ‘무죄추정’이 발동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적법절차의 이념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오늘날의 형사소송체계 하에서는 설령 ‘백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이념이 확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의 공표사실의 출처가 수사기관이든 사건관계자이든 언론의 보도로 인해 그 사실이 사회에 알려지는 과정에는 언론의 역할이 작용한다. 그러한 역할이 부여된 만큼 책임도 함께 따라온다. 인권보도준칙에는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아닌 인권의 수호자로서의 언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점검해야 한다.

3. 피의사실공표 언론보도의 문제점

위에서 제시한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는 사안들에 기반하여 피의사실공표의 언론보도에서 문제되는 점을 4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일방적인 보도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둘째, 피해사실을 규정하는 증거와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셋째, 피의사실 보도 시 사건과 관계없는 사적영역을 다룸으로서 사건의 본질을 흐린다. 넷째, 보도가 수사단계에 과도하게 집중된 반면 재판판결까지 다루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1) 수사기관 측 관점 위주의 보도

최근 박영흠 교수는⁸⁾ 5개 언론매체⁹⁾가 검찰 측 관점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지 혹은 피의자 측 관점을 함께 반영하여 복합적 관점을 제시하는지 여부의 연구 통해 검찰 수사 보도가 검찰에 편향적임을 밝힌바 있다. 즉, 피해자 측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관행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수사를 계기로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졌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올해 10월 1일자로 보고한 신문방송 모니터보고서¹⁰⁾에 의하면 조국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9/10~24, 2주간), 총 166건의 단독 보도가 나왔다. 166건 중 사모펀드, 응동학원, 동양대 표창장 등의 의혹을 다룬 133건의 기사의 출처를 따져봤을 때, ‘검찰’과 ‘법조계’가 가장 많았다. 신문의 경우 75건의 단독 기사 중 30건이, 방송은 단독 기사 58건 중 39건(67%)이 검찰에서 나왔다. 주된 내용이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등과 같이 검찰의 정보에 기반을 두어 기사를 작성했다.

이는 검찰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관행과 함께 ‘출입처’ 문제로 직결된다. 언론매체의 경쟁과 하루분량의 기사를 채워야하는 구조적인 환경으로 인해 출입처 개혁은 출입처가 생긴 이래 수십 년 동안이나 지지부진하다. 이는 수사기관 역시 언론사를 수사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더 나아가 언론이 검찰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예로 검찰은 일반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언론은 이러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취재하거나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을까.

8) 박영흠, 2019 한국언론정보학회 기획세션 발표문

9) KBS, SBS,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10)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방송모니터_조국 단독 기사의 절반은 검찰이 썼다

http://www.ccdm.or.kr/xe/index.php?mid=watch&category=6294&document_srl=287276

과연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 누가 감시할 수 있을지 언론의 역할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보면 청문회 과정을 거쳐 임명되는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국회 의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 국회는 지나친 진영논리로 제대로 된 국정능력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언론이 중심 없이 의혹을 증계해 주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 사법기관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판해야 하는데 오히려 언론이 나서서 수사과정을 증계하다보니,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공직자 검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작금의 우리정치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언론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2) 피해사실을 규정하는 증거와 근거가 불충분한 보도

말 그대로 보도 내용이 허술한 경우이다. 지난 10월 11일 한겨레는 '단독'으로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뒤흔었다>의 제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또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과거사위의 어느 정식조사보고서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었으며 근거 부족으로 타 언론매체에서도 기사를 쓰지 않은 사안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예단하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보도를 내보냈다. 파장이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확인과 같은 기본적인 확인 과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SBS의 지난 9월 7일 <단독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 보도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을 한 컴퓨터 안에서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위조혐의 인정여부를 떠나 직인사진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독으로 보도한 것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혐의를 예단 및 유도하는 보도는 자제되어야 한다.

(3) 사건과 무관한 사적영역의 보도

피의사실 보도 시 사건과 관계없는 사적영역을 다룸으로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

이다. 이러한 기사는 주로 피의자의 가족관계, 과거행적 등을 보도함으로써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선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간다.

2013년도 9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이 의심받는 계기를 제공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조선일보> 혼외자 및 친자확인 기사가 특종으로 보도된다. 이 보도는 결정적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공적업무와 관련이 없는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이었으며 보도운리적인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했다.

2017년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 등은 안경환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안 전 후보자 측은 "남녀 교제를 성폭력으로 근거 없이 비방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일으켰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그리고 올해 7월 23일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이 주광덕·여상규·김진태·곽상도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총 3500만원 손해배상)을 받았다. 아래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면 안 전 후보자의 아들 의혹에 대해 한국당 측의 허위사실만을 그대로 실었음을 볼 수 있다.

당시 정치권은 안 전 후보자 측을 향해 아들의 성폭행 의혹제기, 혼인사실무효판결문 공개 등 개인 사생활을 들추며 후보자를 자진사퇴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언론의 보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는 아래 기사처럼 한국당의 의견과 자료만을 인용함으로써 허위사실을 보도하였고, <TV 조선>은 혼인사실무효판결문을 국회청문회 전에 단독으로 보도했다. 현실적으로 국회청문회에서 나온 사생활 문제에 대해 보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인정하지만, 사생활에 대해 주도적으로 보도하며 중심을 잃고 한쪽의 의견만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한국당, 안경환 아들 징계감경·서울대 입학 감사 요구

송고시간 | 2017-06-23 11:02

서울시의회 회의록 등 추가 공개...성폭행 가능성 시사

(서울=연합뉴스) 김○○ 기자 = 자유한국당은 23일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아들 퇴학 무마 의혹과 관련, 서울시의회 회의록 등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회의록에는 안 전 후보자의 아들 안모씨가 여학생을 기숙사로 불러들인 후 성폭력을 가했다는 교사의 증언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당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까닭에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지 고민을 했다"면서 "그러나 입시 비리는 반드시 적결해야 할 죄악"이라며 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이 공개한 서울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에 따르면 안 전 후보자의 아들 안모씨는 2014년 재학 중이던 자립형사립고 하나고등학교에서 성폭력 의혹 등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심을 거쳐 징계가 감경됐다.

특히 당시 하나고에 재직중이었던 한 교사는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이 여학생을 기숙사로 불러들이고 피임기구를 가져온 뒤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공개하는 등 성폭력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는 "여학생이 동의하지 않아 말하지 않겠지만, 그보다 더 참혹한 성폭력이 있었고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발언, 추가 성폭력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조사단은 또 안 전 후보자가 하나고 교장에게 제출한 탄원서도 공개했다.

안 전 후보자는 탄원서에서 "일류대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수재를 가르쳤다" 등의 문구를 사용,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재심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조사단은 주장했다.

조사단은 "재심사 과정에서 대폭 감경처리에 반대했던 교사 중 한 명이 서울시의회에 증언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안 후보자를 의식한 묵인과 은폐, 부당한 외압행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퇴학 처분까지 받은 안모씨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서울대 수시에 합격한 것은 서울대 입시관리에 있어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며 부정입학 의혹 역시 거듭 제기했다.

(4) 판결에 비해 수사단계에 과도하게 집중된 보도

우리나라의 범죄사건 보도는 수사단계에 치중하고, 그 수사가 재판에서 어떠한 결과로 이어져 확정되는 지까지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아니한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간신문에서 80%가 넘는 기사가 재판 전 단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고 한다.¹¹⁾ 수사 단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후속 재판 결과에 의하여 회복되기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수사 단계 또는 재판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혐의의 입증과 공방이 재판 전 단계에서 혐의자의 어떠한 방어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것이다. ¹²⁾

예전부터 범죄사건 보도로 인하여 재판부가 예단을 갖게 되고 형사재판이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의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한 비판이 많았지만¹³⁾ 이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수사단계는 단지 의혹을 제기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일 뿐,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 허위정보가 난무하고 그 파급력이 커진 오늘날의 미디어환경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재판결과의 보도야말로 오히려 더 필요한 실정이다.

11) 박용규(200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하태훈, 이근우)(2017), 47쪽 재인용.

12) 류영재, 범죄사건 보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검토, 미디어와 인격권[언론중재위원회], Vol.4 No.1 [2018], 136쪽

13) 류영재, 위 논문, 147쪽

4. 언론의 역할

위와 같이 피의사실보도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가를 고민해보게 된다. 당연히 피의사실이 공개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출처’라고 할 수 있는 검·경찰 수사기관의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언론은 어떠한 기준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썼는지 언론‘만’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단순히 받아쓰기 보도로 전달하는 것에 머무르게 되면 오히려 수사기관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그들이 원하는 기사를 쓰고 충분한 사실 확인과 근거를 갖추지 못하면 국민을 위한 언론이 아닌 권력이 원하는 언론에 머물고 말 것이다.

본질적으로 사건보도의 취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범죄사건의 보도는 사회에서 발생한 범죄사실을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며 범죄를 둘러싼 사회 규범에 대한 비판적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한다. 단순히 사건을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피해자의 권리구제, 권력의 부패 고발,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할을 한다.¹⁴⁾

그 과정에서 언론은 자기중심을 가져야 한다. 수사기관의 무죄추정의 원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라는 권력의 무죄추정의 원칙도 작용해야 한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유무죄를 다룰 정당한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여론재판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 피해자를 이미 범죄자로 예단하고 보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피해자의 인격권·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즉, 언론보도행위에는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언론에게는 인권보호의 책임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시점을 벗어나 피해자의 반론권을 충분히 담아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긴 호흡을 가지고 수사단계를 넘어 재판까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있는 취재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와 대중의 관심(호기심)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라는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한다. ‘국민’의 알권리라고 한다면 그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보도할 것과 보도하지 않을 것의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언론이 무엇을 보도하고 무엇을 보도하지 않을 것인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듯하다.¹⁵⁾ 국민이 호기심 있게 주목하는 사안들을 쫓아 기사를 쓰거나, 오히려 언론이 호기심을 자극시켜 또 다른 기사를 생산하는 상황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물론 취재경쟁으로 인해 선정적이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특종을 원하는

14) 류영재, 위 논문, 125쪽

15) 이정훈, 민주주의의 강화와 정치과정의 복원을 위한 언론의 역할, 2019 한국언론정보학회 기획세션 발표문

구조적, 환경적 요인은 인정하나 과연 여기에서 머물러도 좋은지 언론내부의 성찰과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언론이 자기중심을 갖으려면 언론 스스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인권 보호의 책무자라는 사실에 근거한 객관성과 진실성을 갖춘 전문언론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최근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세간의 큰 이목을 끌고 있다. 검찰개혁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이로 인해 검찰 뿐만 아니라 언론의 개혁까지 기대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시행이 된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아 선불리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이러한 검찰의 조치가 계기가 되어 언론환경에 일정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게 된다.

최근 출입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실행여부를 떠나) 각 공론장에서 진행되고 있고 언론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미디어오늘 기사¹⁶⁾에 의하면 법원·검찰을 취재해 본 기자들이 피의사실공포 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언론사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의미 없는 단독 경쟁’은 그만두자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발 보도를 줄이고 ‘공판중심주의’ 보도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엔 언론의 활동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위 본문에서 언급된 문제점과 제안들이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언론의 본래의 소명을 다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언론 스스로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기대한다.

16) 미디어오늘, 2019.12.10., <“검찰 입에만 매달리지 말자” 고개 드는 제안들>